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2020. 9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차

마포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취지 및 목적 **7p**

마포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8p**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최근 흐름 **29p**

서울시 자치구 아파트경비노동자 관련 조례 주요 내용 비교 **33p**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37p**

[자료]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현황 파악 설문지 **39p**

마포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취지 및 목적

- 지난 2020년 5월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아파트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죽음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임. 지난 2014년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도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분신한 바 있음
- 이들의 죽음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임
-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간접고용, 단기계약, 전근대적인 교대제 등 취약한 고용구조 등에서 기인함
-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비업법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 관리업무가 주를 이룸
- 이에 올해 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죽음으로 정부는 물론 각급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노동조합 등 경비노동자 조직이 이루어지 않아 제대로 된 당사자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마포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마포구 차원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마포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마포구 공동주택 현황

- 마포구 공동주택 단지수는 총 218단지, 경비노동자 수는 1,011명임(자료: 마포구청 주택과, 경비노동자 수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이며 확인되지 못한 47단지은 세대수로 추정했음)
- 종류 별로는 아파트 173단지 84.2%, 주상복합 29단지 13.3%, 다세대/연립 16단지 7.3%임
- 이에 대한 경비노동자 수는 아파트 850명 84.2%, 주상복합 141명 13.9%, 다세대/연립 20명 1.9%임

종류	다세대/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합계
단지 수	16	173	29	218
(비율)	7.3	79.4	13.3	100
경비노동자 수	20	850	141	1,011
(비율)	1.9	84.2	13.9	100

표1. 마포구 공동주택 종류별 현황

- 관리방식 별로는 위탁 146단지 67.1%, 자치 57단지 26.3%, 미분류 14단지 6.6%임
- 이에 대한 경비노동자 수는 위탁 801명 79.3%, 자치 161명 15.9%, 미분류 49명 4.8%임

관리방식	자치	위탁	미분류	합계
단지 수	57	146	14	218
(비율)	26.3	67.1	6.6	100
경비노동자 수	161	801	49	1,011
(비율)	15.9	79.3	4.8	100

표2.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방식별 현황

- 세대수 별로는 300세대 미만 145단지 66.7%, 500세대 미만 26단지 11.9%, 700세대 미만 20단지 9.3%, 1,000세대 미만 14단지 6.5%, 1,000세대 이상 12단지 5.6 순서임
- 이에 대한 경비노동자 수는 300세대 미만 358명 35.4%, 1,000세대 이상 241명 23.8%, 700세대 미만 148명 14.6%, 1,000세대 미만 136명 13.5%, 500세대 미만 128명 12.7% 순서임

세대수	3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7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합계
단지 수	145	26	20	14	12	218
(비율)	66.7	11.9	9.3	6.5	5.6	100
경비노동자 수	358	128	148	136	241	1,011
(비율)	35.4	12.7	14.6	13.5	23.8	100

표3. 마포구 공동주택 세대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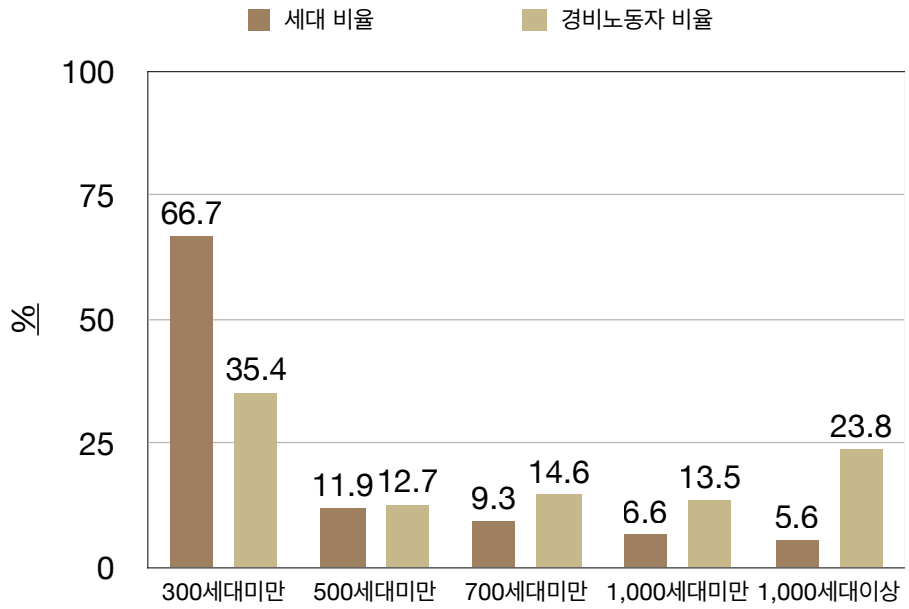


그림1. 마포구 공동주택 세대 비율과 경비노동자 비율

❒ 조사개요

조사목적: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조사기간: 2020년 5월 26일(화)~6월 1일(월) 2주간

조사방법: 일대일 면접

- 이번 조사는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조사에 참여한 아파트경비노동자는 159명으로 지역별, 세대수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참고함
-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는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고, 성북구 등 4개 자치구, 409명의 아파트경비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함

	공덕동	도화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성산2동	상암동	합계
100세대 미만	-	-	-	8	-	11	12	31
300세대 미만	5	1	-	3	8	5	16	38
500세대 미만	-	-	-	3	6	3	9	21
700세대 미만	4	5	1	1	-	-	22	33
1,000세대 미만	-	-	-	-	1	5	14	20
1,000세대 이상	-	3	-	-	-	13	-	16
합계	9	9	1	15	15	37	73	159

표4. 실태조사에 참여한 마포구 경비노동자 현황

- 이번 설문에 참여한 경비노동자는 총 159명으로 전체 경비노동자의 15.7%임
- 세대수 별로는 700세대 미만 22.3%, 300세대 미만 19.3%, 500세대 미만 16.4%, 1,000세대 미만 14.7%, 1,000세대 이상 6.6%로 1,000세대 이상 표본이 가장 작음
- 이는 최근에 지어진 큰 규모의 공동주택일수록 전문경비업체가 비율이 높고, 설문조사 참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개인현황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9.2세로 서울시 2019년 기준 68.1세와 비슷함
- 이는 1년 사이에 경비노동자 고령화가 점점 심해주고 있음을 보여줌
- 최저 연령은 59세(1명) 최고 연령은 80세(1명)로 대부분 6~70대임
- 동거하는 가족수는 2.5명,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수는 1.5명으로 이 역시 서울시와 비슷한 결과를 보임

나이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명	1	76	81	1	159

표5. 설문에 참여한 마포구 경비노동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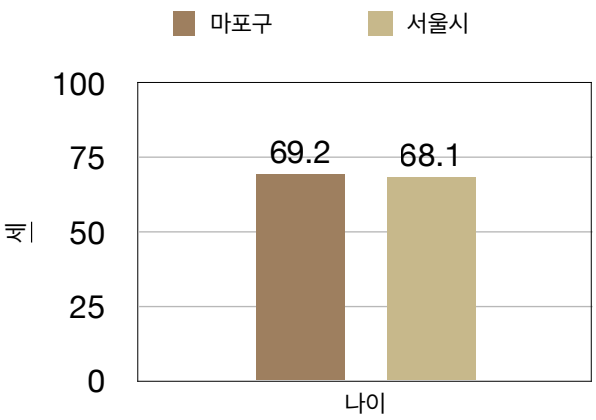


그림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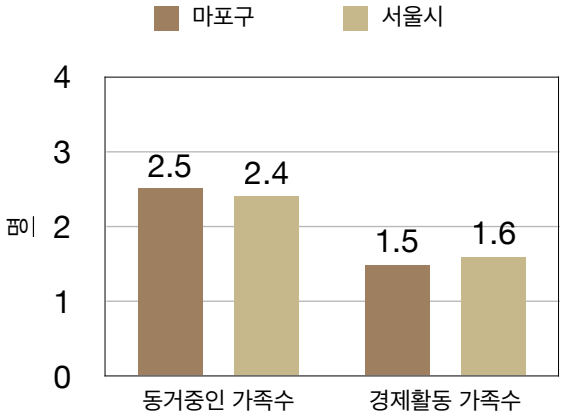


그림3. 가족수

❒ 근무기간

-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근무기간은 평균 36개월로 서울시와 똑같음
-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한 총 근무기간 역시 평균 74개월로 서울시 79개월과 비슷한 결과임
- 총 근무기간이 3년 초과인 응답자는 10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3.5%에 이름
- **하지만, 그곳이 첫근무지인 응답자는 20.7%(21명)에 불과해 이직률이 높고 고용상황이 불안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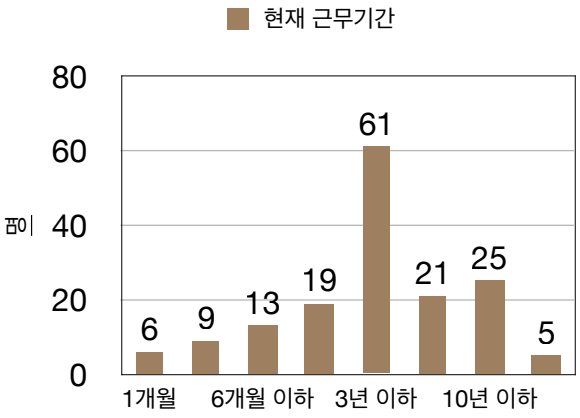


그림4. 현재 근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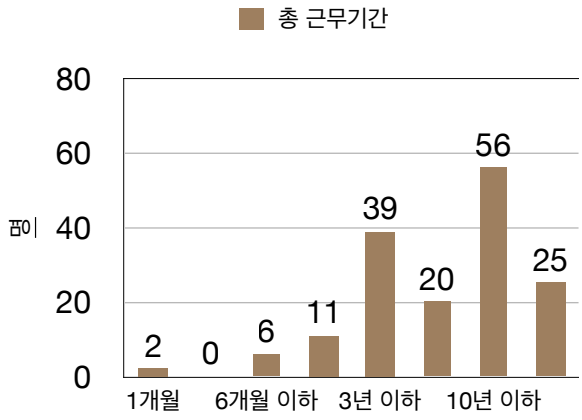


그림5. 총 근무기간

현재 근무기간	1개월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명	2	0	6	11	39	20	56	25
첫 근무지	2	0	4	7	23	6	11	4

표6. 현재 근무기간

총 근무기간	1개월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명	2	0	6	11	39	20	56	25
첫 근무지	2	0	4	7	23	6	11	4

표7. 총 근무기간

❒ 고용방식

- **고용방식은 전체 응답자의 95%인 151명이 '경비용역회사 고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85.8%보다 9.5%p 높은 수치임**
- '위탁관리회사 직고용'과 '입주자대표회이 직고용'은 똑같이 2.5%, 4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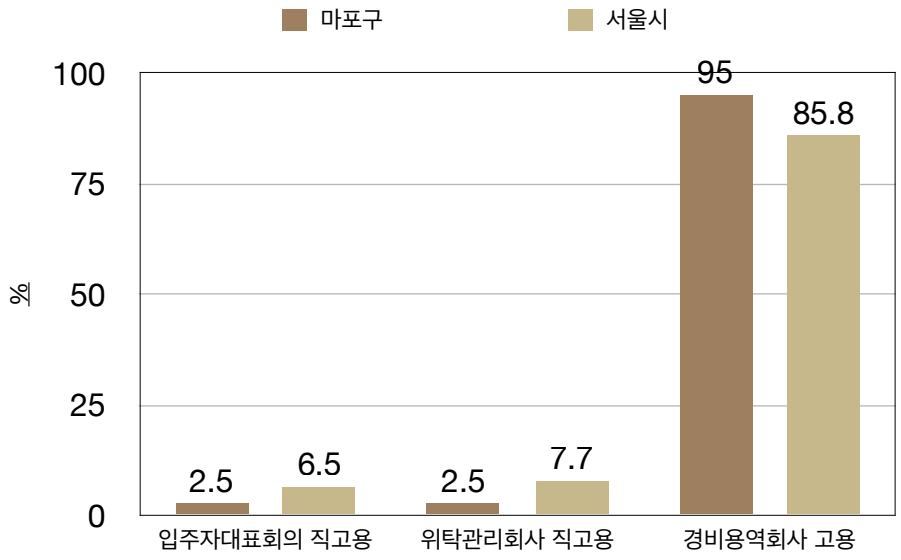


그림7. 고용방식

고용방식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	위탁관리회사 직고용	경비용역회사 고욕
명	4	4	151

표8. 고용방식

❒ 고용승계

-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현황은 '전원 재고용'이 30.1%(48명)에 불과하고** '일부 계약해지' 44.7%(71명), '대다수 계약해지' 18.9%(30명), '전원 계약해지' 6.3%(10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울시와 똑같은 순서임
- 다만, '일부 계약해지' 비율이 조금 낮고 '전원 재고용'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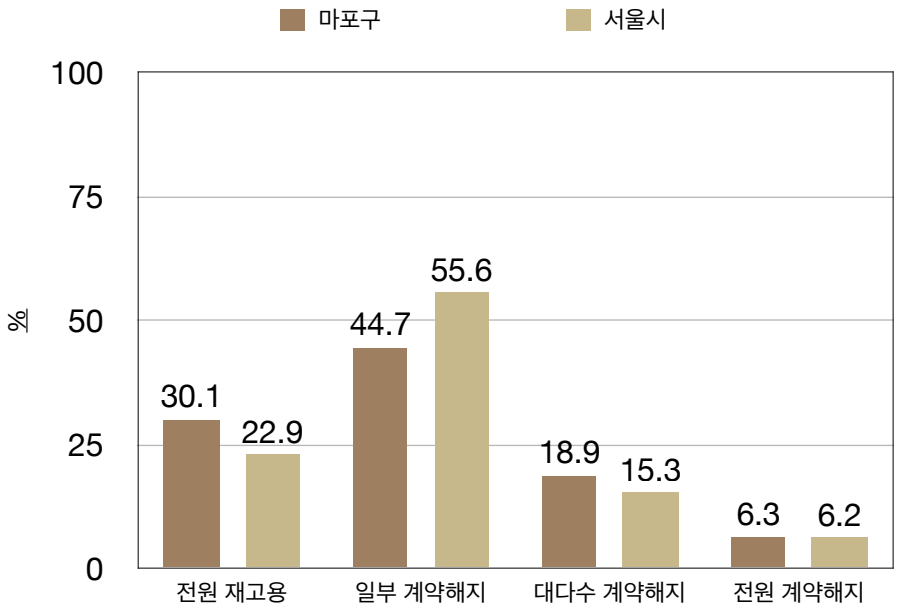


그림8.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고용승계	전원 재고용	일부개약해지	대다수 계약해지	전원 계약해지
명	48	71	30	10

표9. 위탁관리회사 또는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은 '3개월 이하' 52.9%(84명), '6개월' 13.2%(21명), '1년' 33.9%(54명), '2년' 0%(0명)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시와 비교해 '3개월 이하'는 22%p 높고, '1년'은 19.9%p 낮은 결과로 마포구의 단기간 근로계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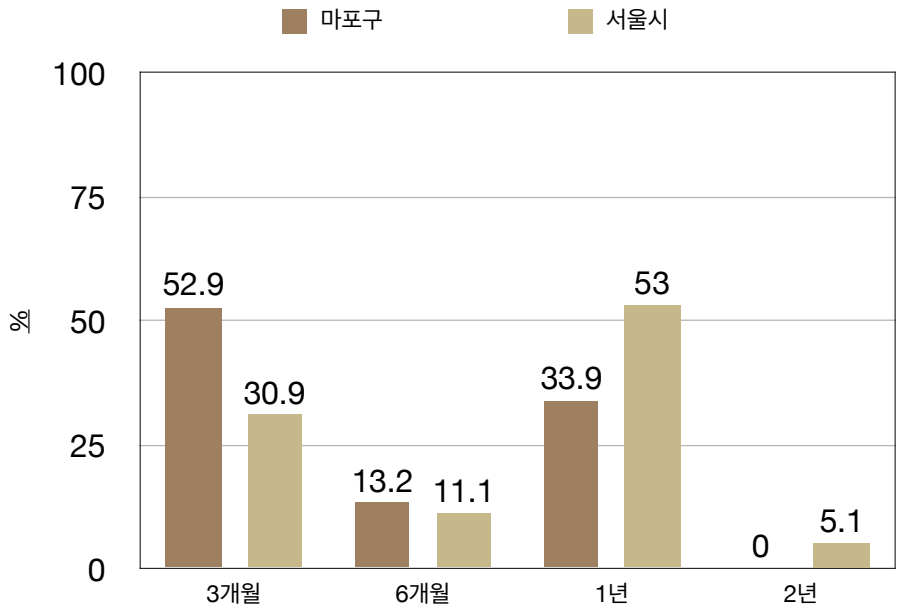


그림9.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명	84	21	54	0

표10. 근로계약기간

[세대수와 근로계약기간]

- 세대수를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이하' 계약자가 가장 많은 곳은 1,000세대 이상 80.7%, 700세대 미만 69.2%, 900세대 미만 52%, 300세대 미만 45%, 500세대 미만 18.9%로 나타남
- '1년 이상' 계약자는 500세대 미만 43.2%, 300세대 미만 40%, 1,000세대 미만 36%, 700세대 미만 23.1%, 1,000세대 이상 7.7%로 나타남
- **대체로 세대수가 많을수록 '3개월 이하' 단기계약이 많고 '1년 이상' 계약자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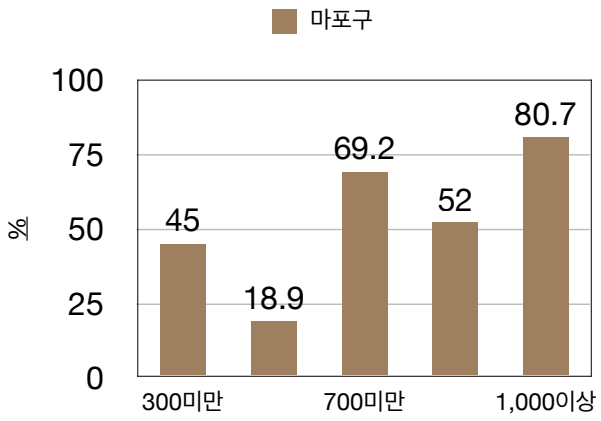


그림10. 세대수와 3개월 이하 계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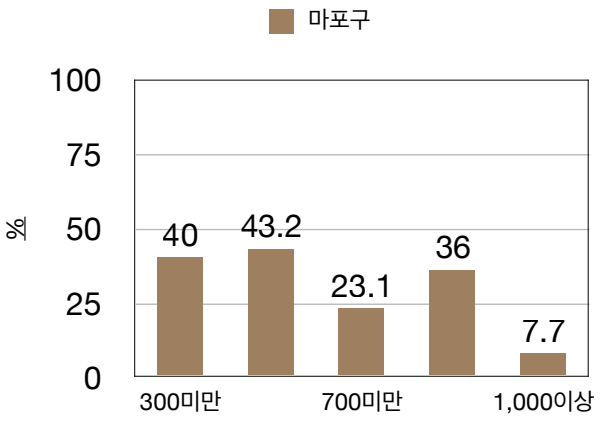


그림11. 세대수와 1년 이상 계약자

❒ 정년

- 정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8명),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4.9%(151명)으로 서울시와 16.1%p 차이가 남
- 반면, 정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정년은 71세로 서울시 69.6세와 비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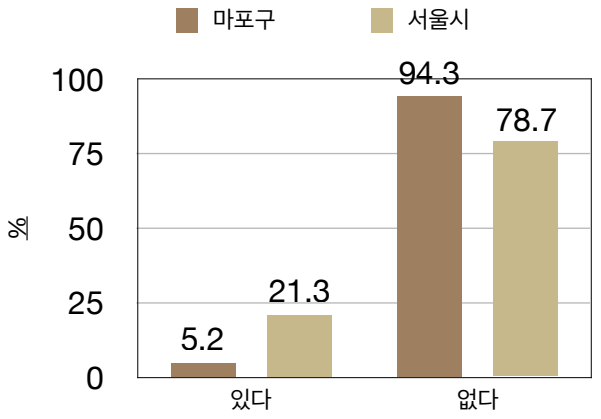


그림12. 정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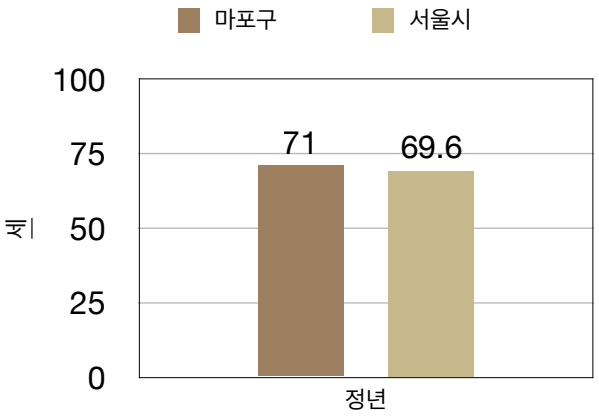


그림13. 평균 정년

정년	있다	없다
명	8	151

표11. 정년 유무

❒ 인력 변화

- 2019년과 2020년 인력 변화 양상은 2019년 평균 12.2명에서 2020년 평균 11.9명으로 0.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8년과 2019년 인력 변화 양상을 조사한 서울시 결과와 동일함
- 서울시 결과를 보면 세대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입주기간이 오래될수록 감원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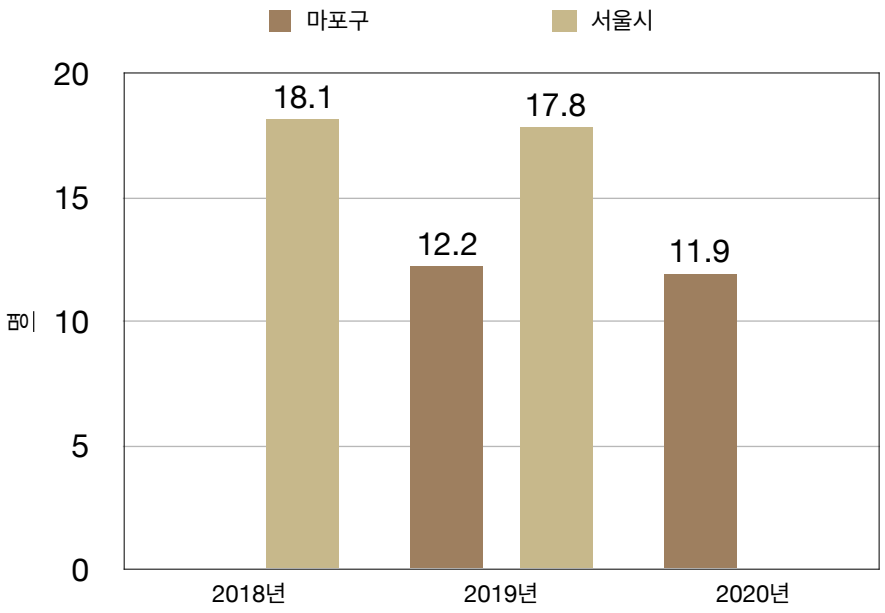


그림13. 인력변화

❒ 부당해고 경험

- 이전 다른 아파트에서 부당해고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2%(19명)이 부당해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는 서울시보다 10.2% 낮음
- **지금 일하는 아파트가 '첫 근무지'라고 답한 응답자는 34.6%(55명)로 서울시보다 16.8%p 높으며, 이는 단기간 근로계약 비중이 높은 마포구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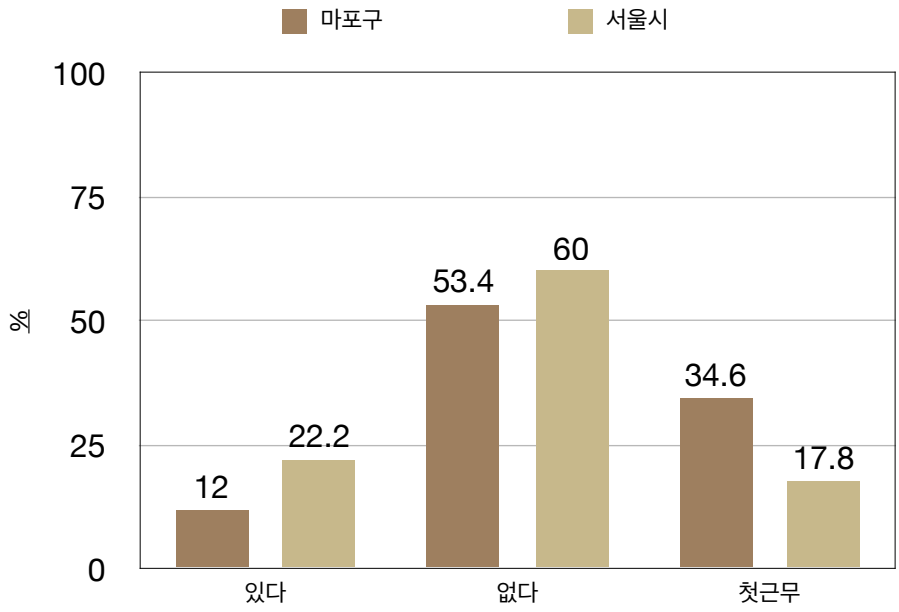


그림14. 부당해고 경험

부당해고 경험	있다	없다	첫근무
명	19	85	55

표12. 부당해고 경험

❒ 근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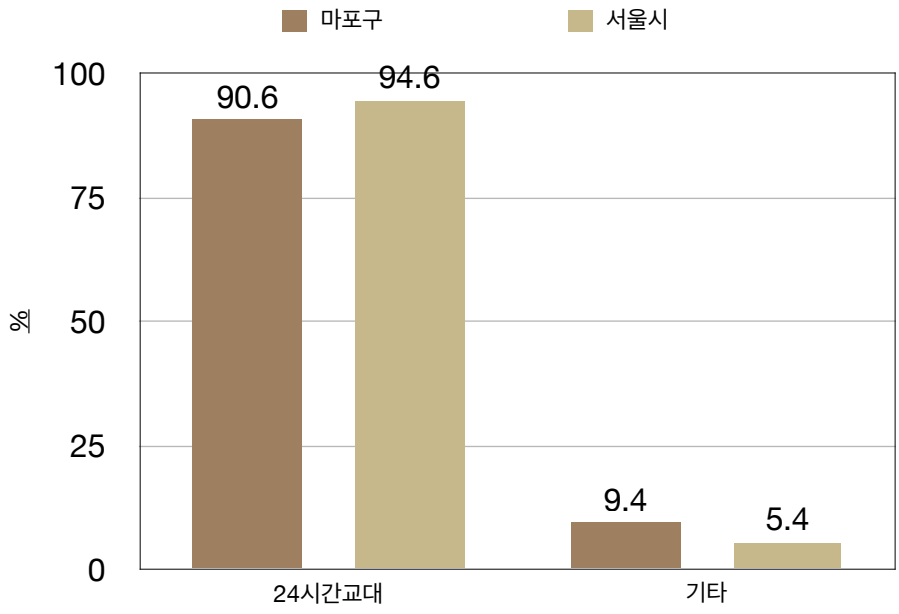


그림15. 근무형태

- 근무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0.6%(144명)이 '24시간 교대제'라고 답했고 9.4%(5명)이 '기타'라고 답했고, 이는 서울시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임

근무형태	24시간교대	기타
명	144	5

표13. 근무형태

❒업무비중

- 소요시간과 중요도를 고려한 업무비중를 묻는 질문에 '방범' 21.4%, '분리수거' 21.0%, '청소' 20.8%, '조경' 15.9%, '택배' 12.0%, '주차' 8.9% 순으로 응답함
-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분포이나 '조경'이 10.3%p 높고 '방범'과 '주차'가 각각 4.8%p, 4.1%p 낮게 나타남
- **경비업법에 근거한 업무인 '방범'이 21.4%로 가장 높지만 청소, 분리수거, 조경을 합하면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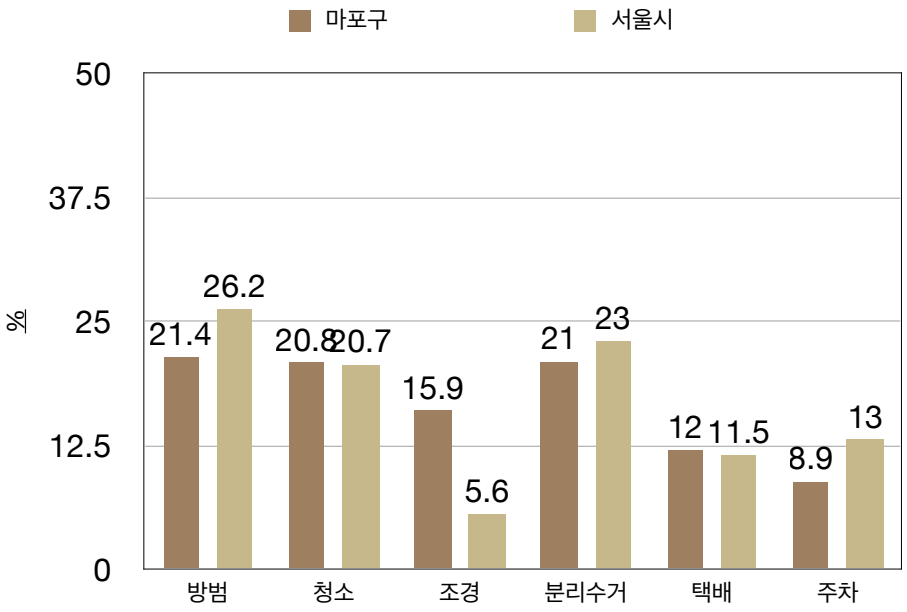


그림16. 업무비중

❒휴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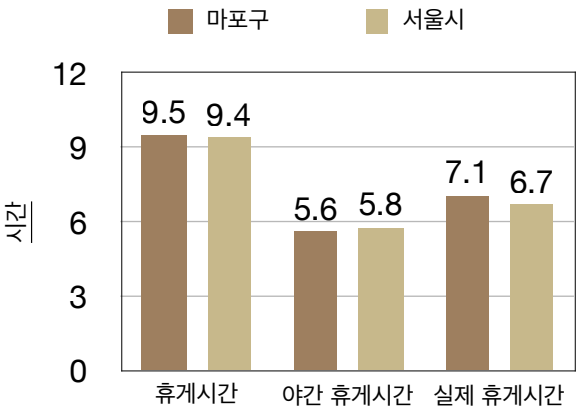


그림17. 휴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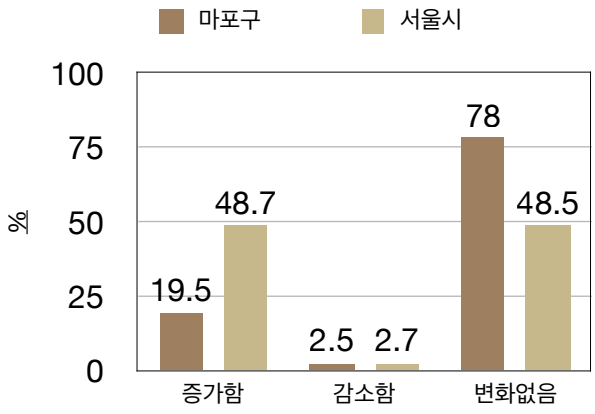


그림18. 휴게시간 증감

-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평균 9.5시간, 야간 휴게시간은 5.6시간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결과임
- 하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7.1시간으로 2.4시간 줄어듬
- 2019년 대비 휴게시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9.5%가 '증가함'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서울시보다 29.2%p 낮음
-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 반면,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인상률이 2.9%에 불과해 휴게시간 증가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세대수와 휴게시간]

- 세대수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300세대 미만 10.3시간, 1,000세대 이상 10.1시간, 1,000세대 미만 9.7시간, 500세대 미만 9.1시간, 700세대 미만 9시간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지만, 세대수가 적거나 많을수록 휴게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실제 휴게시간은 1,000세대 이상 8.5시간, 700세대 미만 7.6시간, 500세대 미만 6.6시간, 1,000세대 미만 6.4시간, 300세대 미만 6.3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의 차이는 300세대 미만 4시간, 1,000세대 미만 3.3시간, 500세대 미만 2.5시간, 1,000세대 이상 1.6시간, 700세대 미만 1.4시간으로 300세대 미만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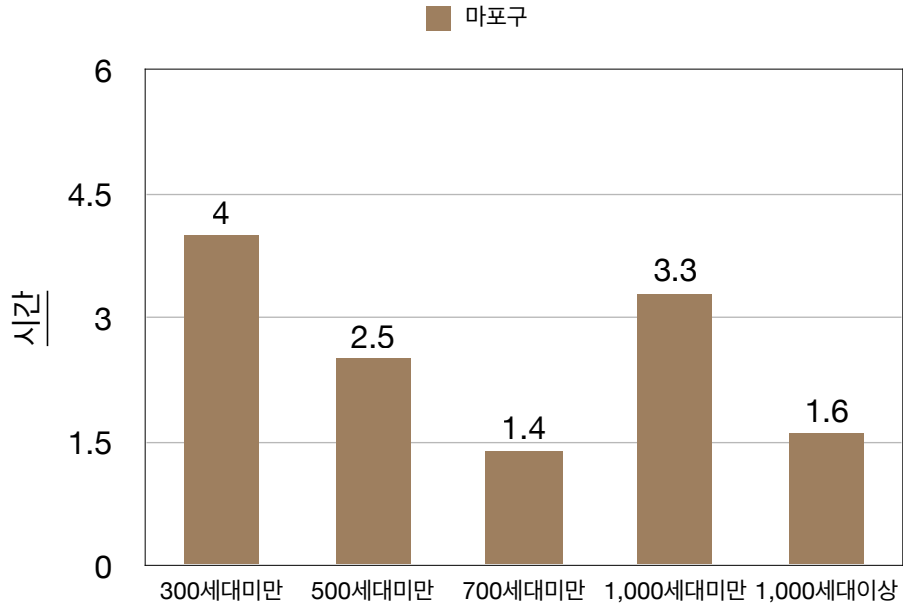


그림19. 세대수별 휴게시간 차이

	3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7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10.3	9.1	9.0	9.7	10.1
실제 휴게시간	6.3	6.6	7.6	6.4	8.5
차이	4.0	2.5	1.4	3.3	1.6

표14. 세대수와 휴게시간

❒ 휴게시간 이용

- 휴게시간 사용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4%(70명)가 '근무지에서 비상대처'한다고 답했고, 26.4%(42명)가 '근무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해 응답자의 70.4%가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29.6%(47명)에 불과함
- 서울시 결과와 비교하면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응답자는 9.75%p 높고, '근무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응답자와 '근무지에서 비상대처'하는 응답자가 각각 3.8%p, 5.9%p 낮은 결과를 보여 휴게시간 사용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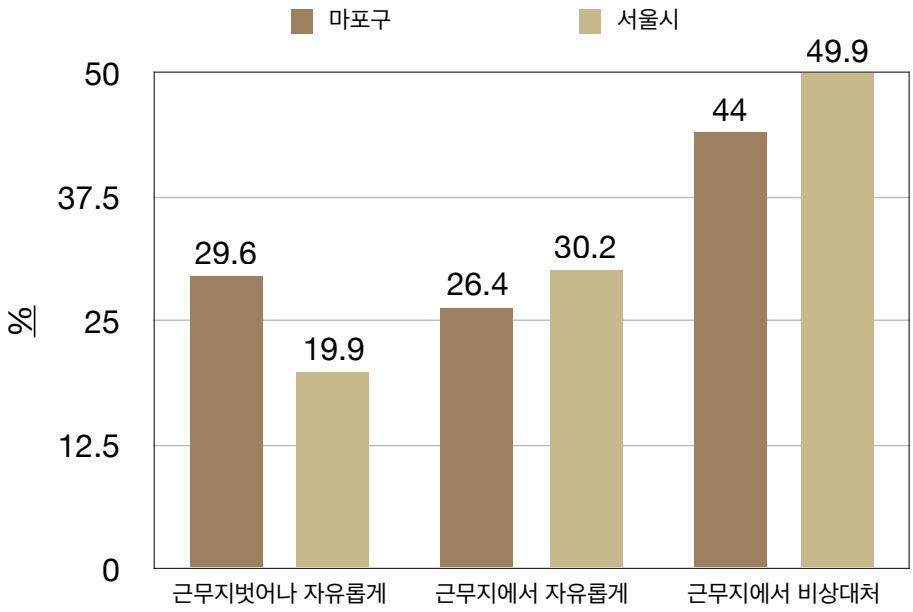


그림20. 휴게시간 이용

[세대수와 휴게시간 이용]

- 세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응답자는 1,000세대 미만 36%, 1,000세대 이상 34.6%, 700세대 미만 30.7%, 500세대 미만 27.1%, 300세대 미만 10% 순으로 나타남
- '근무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응답자는 1,000세대 이상 30.8%, 500세대 미만 27.1%, 1,000세대 미만 26%, 300세대 미만 25%, 700세대 미만 23.1% 순으로 나타남
- '근무지에서 비상대처'하는 응답자는 300세대 미만 65%, 700세대 미만 46.2%, 500세대 미만 45.8%, 1,000세대 미만 38%, 1,000세대 이상 34.6% 순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세대수가 적을수록 '근무지에서 비상대처'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근무지 벗어나 자유롭게'이용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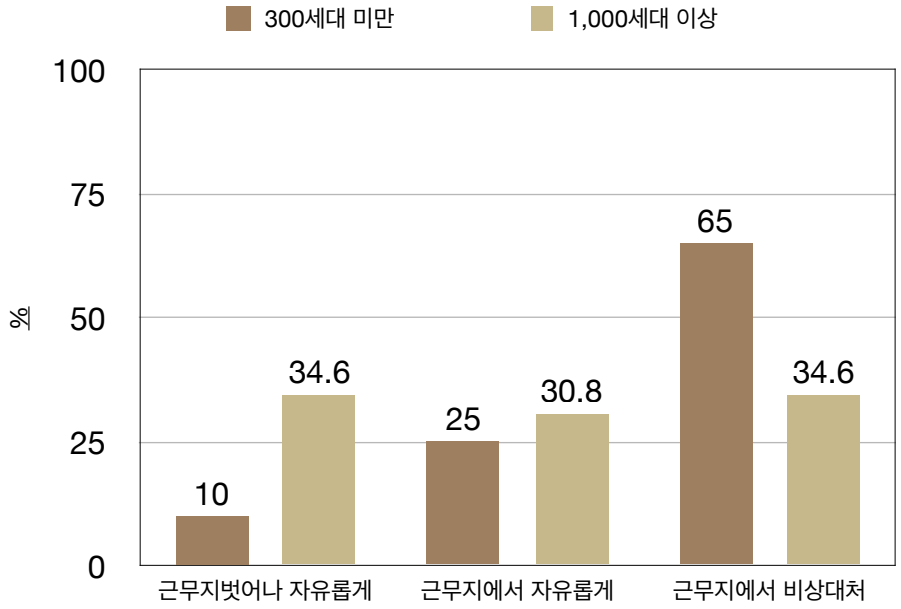


그림21. 세대수와 휴게시간 이용

	3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7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근무지벗어나자유롭게	10	27.1	30.7	36	34.6
근무지에서자유롭게	25	27.1	23.1	26	30.8
근무지에서비상대처	65	45.8	46.2	38	34.6

표15. 세대수와 휴게시간 이용

❒휴게공간

- 휴게공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8%(33명)가 '경비초소 겸용'이라고 답해 휴게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별도의 휴게공간 있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9.2%(126명)인데, 휴게공간이 '지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6.5%(74명), '지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32.7%(52명)으로 나타남
- 서울시와 비교하면, '경비초소 겸용' 응답자는 20.3%p 낮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지상인 응답자는 23.5%p 높아 상대적으로 휴게공간 여건은 좋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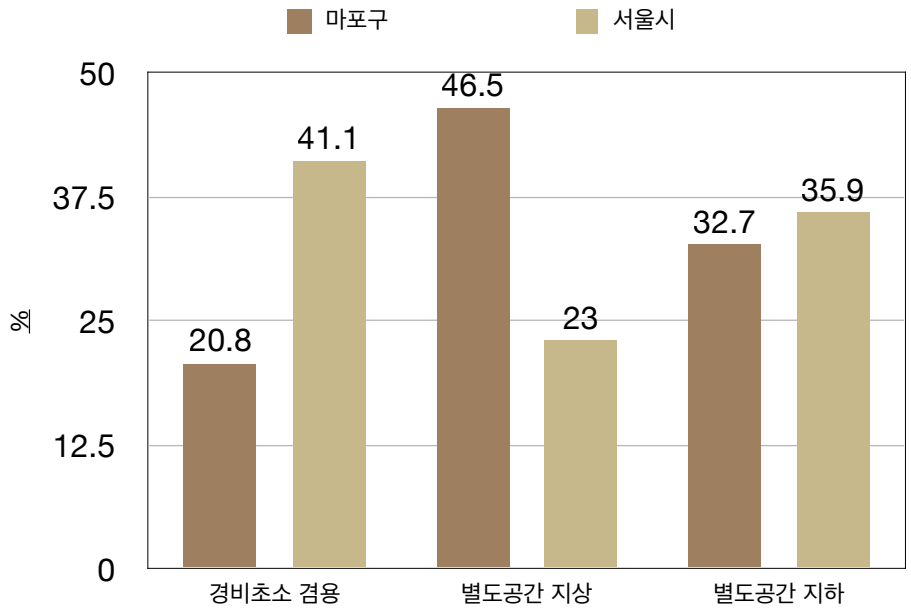


그림22. 휴게공간

❒연차휴가

- 연차휴가를 묻는 질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6%(89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와 비교해 8.6%p 낮은 결과임
- '사용 어렵고 수당으로 받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1%(56명)로 서울시보다 12%p 높음
- '사용 어렵고 수당도 받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서울시보다 5.4%p 낮지만, 6.9%(14명)가 임금체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휴가 사용시 대체인력은 '다른 동료 대체' 81.1%(129명)이 가장 높고 '본인이 일당 주고 구함' 9.4%(15명), '초소 비워둠' 6.3%(10명), '기타' 3.2%(5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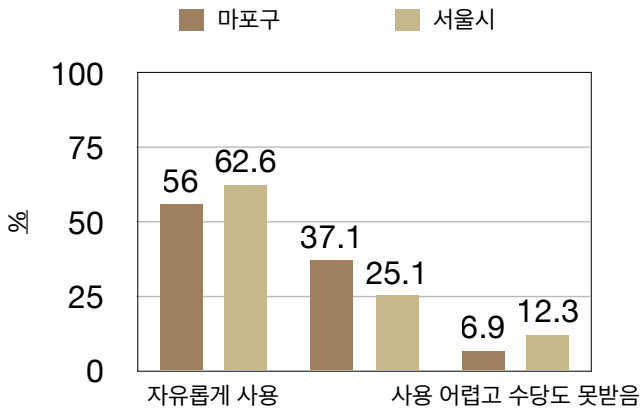


그림23. 연차휴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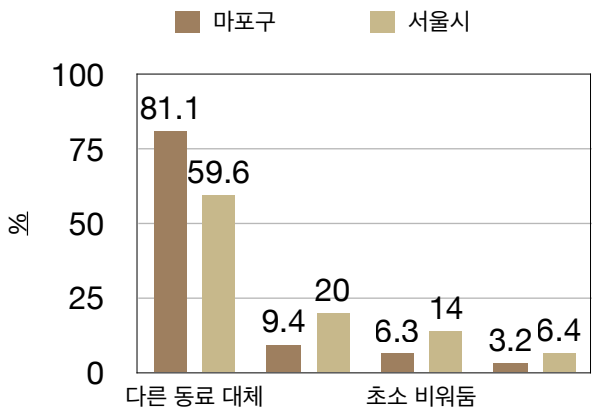


그림 24. 연차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

❒ 병원 치료 경험

- 병원 치료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8.1%(140명)가 ‘없다’고 답했고 11.9%(19명)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서울시와 비슷한 결과임
- 병원 치료 시 비용은 57.8%(11명)가 ‘본인’ 부담이라고 답했고 ‘관리사무소’와 ’산재보험’이 똑같이 21.1%(4명)으로 답해 서울시와 비교할 때 ‘본인’ 부담이 22.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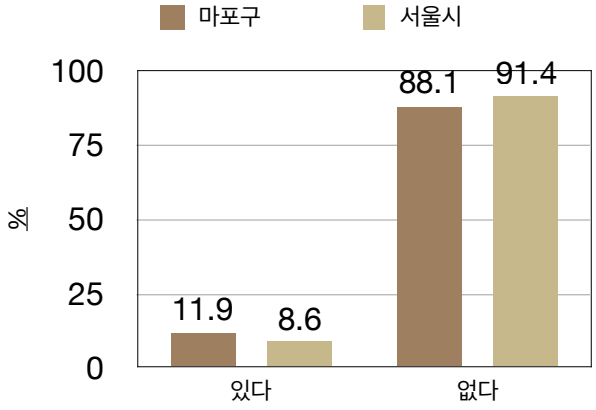


그림25. 병원 치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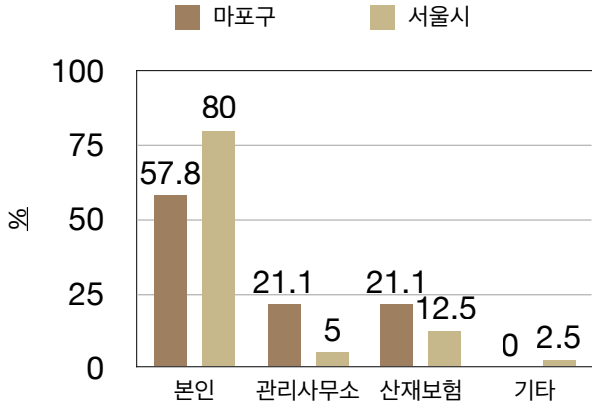


그림26. 병원 치료 시 비용

❒ 월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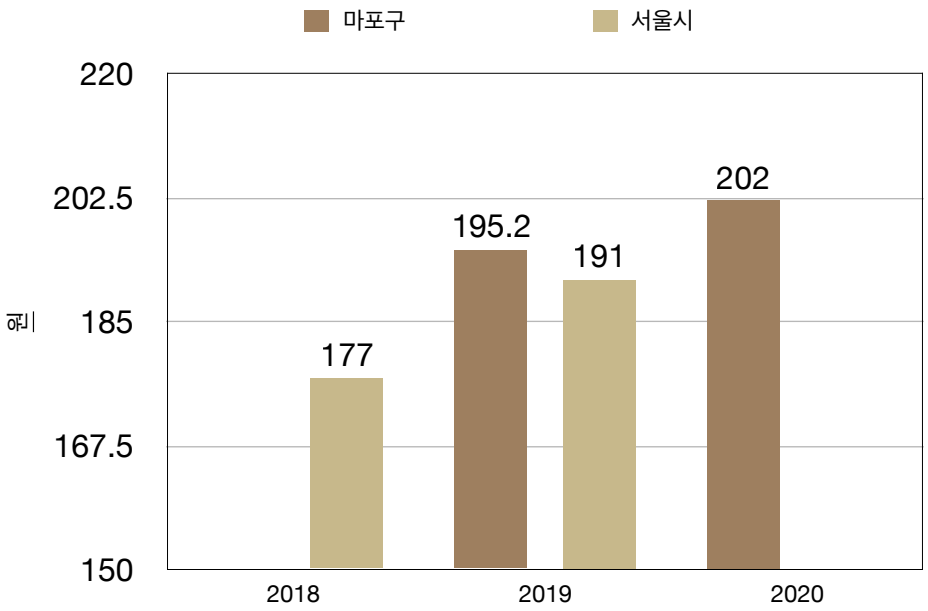


그림27. 월 평균임금

평균임금	160 만원 이하	170 만원 이하	180 만원 이하	190 만원 이하	200 만원 이하	210 만원 이하	220 만원 이하	230 만원 이하	240 만원 이하	250 만원 이하	합계
명	1	11	6	30	43	36	3	18	10	1	159

표16. 월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은 2019년 195.2만원, 2020년 202만원으로 3.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2.9%와 비슷한 수준임
-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77만원, 2019년 191만원으로 7.9% 인상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 낮은 수준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월 평균임금은 '{(24시간-휴게시간)*365/2/12}*시급+{8시간-야간 휴게시간)*365/2/12}*시급*0.5'임
- 이를 휴계시간 평균 9.5시간, 야간 휴게시간 5.6시간,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51,040원임
- **위의 평균임금 응답자 결과에서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57.2%(91명)은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와 비교해 30%p 높은 수치임**
- **또한 휴계시간을 실제 휴게시간 7.1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임금은 2,364,575원으로 아래 응답자 중 93.0%(148명)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와 비교해 21.6%p 높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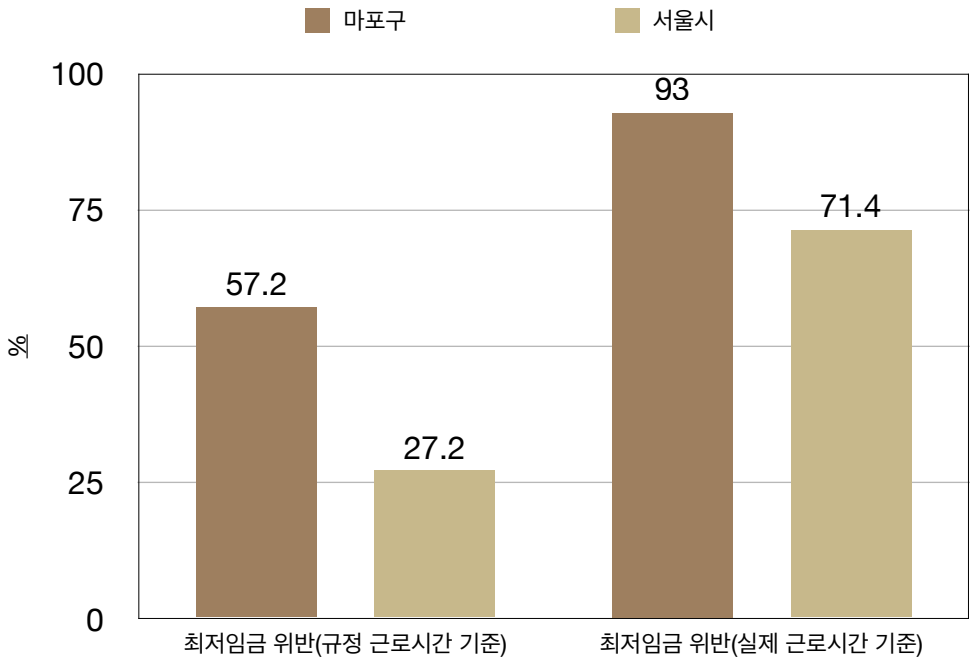


그림28. 최저임금 위반

- 월 평균임금을 시급으로 바꿔 계산해도 최저임금 위반 상황을 알 수 있음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시급 계산식 '월평균임금/{(24시간-휴게시간)*365/2/12}'에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을 구분해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음
- **즉, 규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급이 9,1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7,859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8.5%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2019년 서울시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실제 근로시간 시급이 8.7% 낮은 것으로 나타남**

기준	규정 근로시간 기준 시급	실제 근로시간 기준 시급	최저임금
2020년 마포구 경비노동자 시급	9,160원	7,859원	8,590원
2019년 서울시 경비노동자 시급	8,716원	7,623원	8,350원

표17. 근로시간별 경비노동자 시급

❒ 부당대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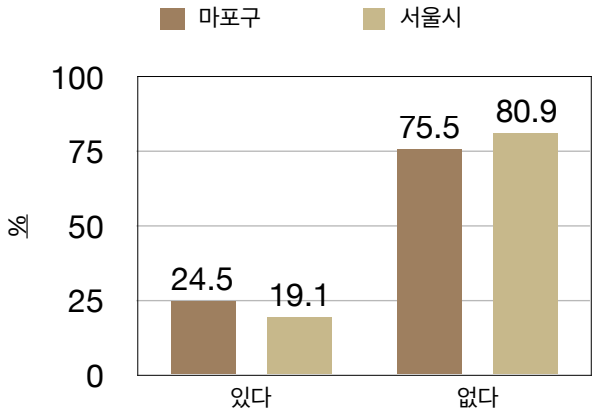


그림29. 부당대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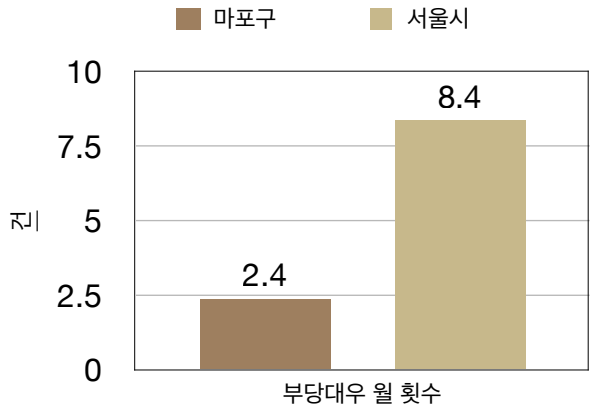


그림30. 부당대우 횟수

- 입주민으로부터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75.5%(120명)이 '없다'고 답했고 24.5%(39명)이 '있다'고 답함
-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부당대우 횟수를 묻는 질문에 월 평균 2.4건이라고 답함
- 서울시와 비교하면 부당대우 경험 유무는 5.4%p 높으나, 횟수는 6%p 낮게 나타남

❒만족도

- 일에 대한 만족도에는 ‘보통’ 52.8%(84명), ‘만족’ 33.3%(53명), ‘불만족’ 8.8%(14명), ‘매우만족’ 3.7%(6명), ‘매우불만족’ 1.4%(2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울시와 비슷한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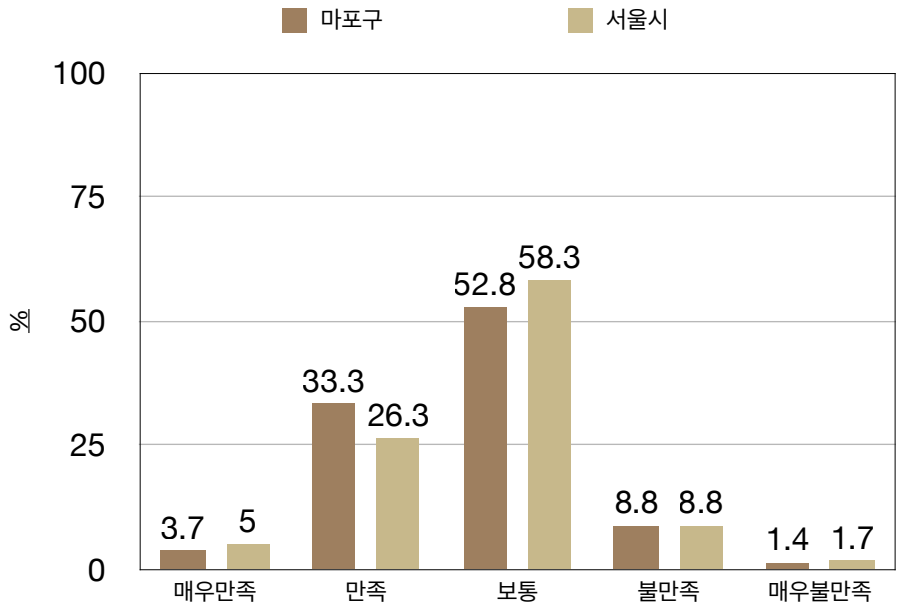


그림31. 만족도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명	6	53	84	14	2

표18. 만족도

❒당사자 모임 필요성

- 당사자 모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 60.3%(96명), ‘보통’ 18.9%(30명), ‘매우필요’ 16.4%(26명), ‘불필요’ 4.4%(7명), ‘매우불필요’ 0%(0명) 순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서울시와 비슷한 양상임

모임 필요성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명	26	96	30	7	0

표19. 당사자 모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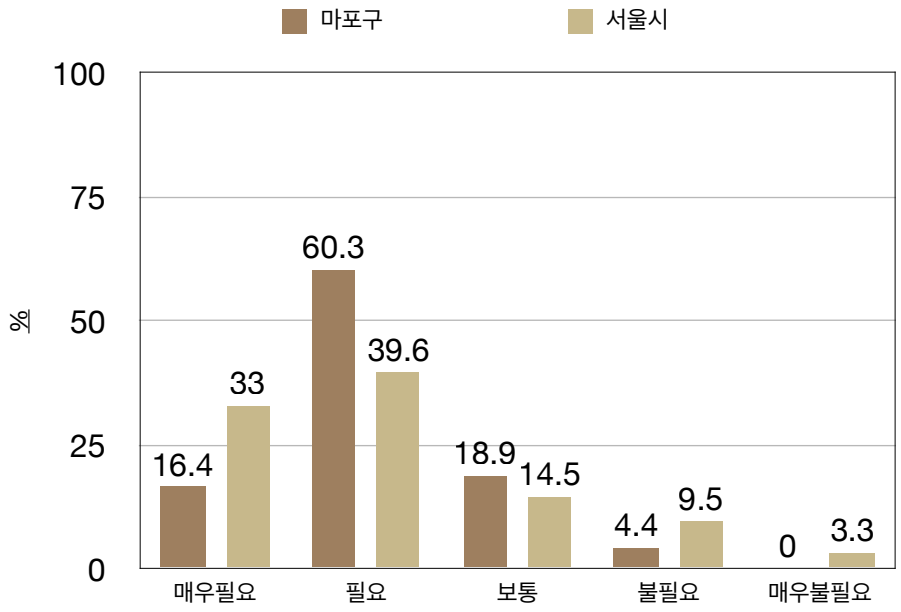


그림32. 당사자 모임 필요성

❒결론

- 전체 응답자의 95%가 '경비용역회사 고용'으로 나타나 간접고용의 비율이 높음
- 경비용역회사 변경 시 '전원 재고용'은 30.1%에 불과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함
-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하'가 52.9%로 단기간 근로계약 문제가 심각함
- 근무형태는 90.6%가 '24시간 교대제'라고 답해 근무조건이 열악함
- 경비업법에 근거한 업무인 '방범'은 21.4%에 불과하고 청소 등 관리업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은 평균 9.5시간이만, 실제 휴게시간은 7.1시간으로 2.4시간 줄어듬
- 휴게시간을 '근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응답자는 29.6%에 불과함
-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하고,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응답자도 6.9%에 이름
- 규정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은 57.2%, 실제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은 93%로 각각 추정할 수 있어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전체 응답자의 76.7%가 당사자 모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하루빨리 당사지 모임을 조직해야 함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최근 흐름

❒ 최근 흐름

- 지난 5월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아파트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8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주요 내용

1. 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표준 관리규약 준칙’ 마련 시·도지사 권고
   - 공동주택 경비원 갑질신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
   -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 엄정대응 등
2. 입주민 등 인식개선
   - 관계부처 공동으로 캠페인 실시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의무교육 반영
3.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 실시
   -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 갑질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트라우마 상담 및 스트레스 상담 지원 등
4. 업무범위 명확화
   -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 구성, 개선방안 마련
   -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 검토
   - 경비원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 및 지도·감독

- 국회에서도 지난 7월 21일 천준호 의원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진행, 8월 5일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상생협약서 제1차 10대 실천과제

1.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 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 일원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3.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거부 권한 명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4.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개정)
5. 공동주택관리준칙 보완을 통한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및 고용안정
6.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및 적용 컨설팅
7.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8. 경비노동자 지역별 전담 신고센터 설립 및 법률 지원
9. 입주민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10.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 서울시는 6월 25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을 발표했고, 경기도 역시 공동주택관리규칙 준칙을 개정하고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을 발의함

서울시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 주요 내용

1. 고용안정
   -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 보조금 인센티브,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칙 준칙’에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금지 규정 신설
2. 생활안정
   -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
3. 분쟁조정
   -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설치
   -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에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파견,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지원
   - 아파트 단위 대화기구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 운영
4. 인식개선
   - 동 대표, 관리소장 등 노동인권교육 강화
5. 재도개선
   - 공제조합 지원근거 등 담음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 조례’ 신설
   -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 신설

경기도 경비원 인권 보호 대책 주요 내용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
   -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포함
2.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 제정
   -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정책 개발 및 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
   -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및 고용 승계 대책·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인력 은행 마련, 사용자를 위한 노무 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 추진
   -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사기진작 행사 개최 등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 지원
   - 권리 구제 상담, 복지증진 사업, 조정 및 화해, 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및 복지증진 사업

- 자치구 차원으로는 고양시가 가장 먼저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6월 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7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7월 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7월 16일) 등이 차례대로 제정됨

<참고> 아파트경비원 고용 안정 조례

○ 현황

-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
-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
-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인력 은행 마련 및 관리
- 일자리안정자금 등 국가 정책과 연계 혹은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고용 보조금 지원

○ 2020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내용: 아파트 단지별 최대 1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대상: 만55세 이상 경비원
- 사업실적: 2017년(20개소, 경비원 50명/99,280천원), 2018년(15개소 26명/58,555천원), 2019년(18개소 39명/85,645천원)

서울시 자치구 아파트경비노동자 관련 조례 주요 내용 비교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 [시행 2020.06.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시행 2020.07.0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2.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 4.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 지원 3.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4. 고령자 경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5. 고령자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 6. 고령자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원방안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은행을 마련 · 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을 설치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또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봉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 ① 구청장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 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노동인권 교육	제4조(노동 인권 보호) 구청장은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 인권 교육 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3.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노동 인권 보호) ① 구청장은 고령자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 인권 교육 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3. 고령자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 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협의체 지원	제6조(협의체 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근로 조건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상담소 운영	제7조(상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강북구가 지정하는 노동자종합지원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동복지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과제

- 마포구는 주택과를 주무부서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을 세웠음
- '갑질 및 부당노동 행위 신고센터' 개설,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입주자 등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하지만 이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이에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인권 조례(가칭)'을 제정해야 할 것임
- 그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경비원 인권 및 고용 안정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고용 안정 지원 방안,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기준, 노동인권교육, 경비노동자 협의체 구성, 전담 신고센터 및 시정권고 등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마포구청 주택과) 주요 내용

1. '갑질 및 부당노동 행위 신고센터' 개설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지시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중재
   - 갑질 및 부당노동 행위 상담·신고접수 등
   - 신고자 보호대책 마련
2.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인권존중 의무 명시
   - 경비노동자등 시설·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 마련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개별 단지 관리규약 심사 철저
4. 입주자 등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시 경비원 인권 관련 내용 추가
   - 공동체 활성화 교육 강화
   - 갑질 근절 캠페인 시행

❒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인권 조례(가칭)’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 경비원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과 시행 등

나.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다. 고용 안정 지원

- 인력은행 마련 및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지원

라.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한: 1년 미만 단기계약, 노동인권교육 불이행, 시정권고 불이행 등
- 공동주택 보조금 우선 지원: 경비원 기본시설 설치, 관리규약 상 고용승계 및 독소조항 여부 고려

마. 노동인권교육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바. 경비노동자 협의체 구성

- 경비원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 지원 및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사. 전담 신고센터 및 시정권고

- 전담 신고센터 설치 및 시정권고

[붙임 자료]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현황 파악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특성		
1-1. 연령	만 ( )세	
1-2. 동거하는 가족 수(본인 포함)	( )명	
1-3.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수(본인 포함)	( )명	
1-4. 현재 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	( )년 ( )개월	
1-5. 경비노동자로 근무한 총 기간(다른 사업장 포함)	( )년 ( )개월	

근로계약		
2-1. 고용방식	① 입주자대표회의 직고용 ③ 경비용역회사 고용	② 위탁관리회사 직고용 ④ 기타( )
2-2.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방법	① 전원 재고용 ③ 대부분 계약해지(일부 재고용)	② 대부분 재고용(일부 계약해지) ④ 전원 계약해지
2-3. 근로계약기간	( )년 또는 ( )개월	
2-4. 정년	① 있다 만 ( )세	② 없다
2-5. 작년 대비 경비원 수	① 2019년 ( )명	② 2020년 ( )명
2-6. 다른 아파트에서 부당해고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노동조건		
3-1. 근무형태	① 24시간 교대제(격일) ③ 기타( )	② 12시간 교대제

3-2. 업무비중(합계 100%)	① 방범 (%) ② 청소 (%) ③ 조경 (%) ④ 분리수거 (%) ⑤ 택배관리 (%) ⑥ 주차관리 (%)
3-3.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휴게시간	① 택1근무일 당 총 휴게시간 ( )시간 ( )분 ② 택밤 10시~아침6시 사이 휴게시간 ( )시간 ( )분
3-4. 실제 휴게시간	( )시간 ( )분
3-5. 작년 대비 휴게시간 증감	① 증가 ( )분 ② 감소 ( )분 ③ 변화없음
3-6. 휴게시간 사용	①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으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③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고, 급한 일이 발생하면 대처해야 한다
3-7. 휴게공간	①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 ② 별도의 휴게공간 있음(지상) ③ 별도의 휴게공간 있음(지하)
3-8. 연차휴가	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음 ② 휴가 사용이 어렵고, 수당으로 받음 ③ 휴가 사용이 어렵도, 수당도 받지 못함
3-9. 휴가 시 대체근무	① 다른 동료가 대체 ② 본인이 일당 주고 구함 ③ 초소를 비워둠 ④ 기타( )
3-10. 업무 상 병원 치료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3-11. 이 경우 비용 부담	① 본인 ② 관리사무소 ③ 산재보험 ④ 기타( )
3-12. 월 평균임금(세전금액)	① 2019년 ( )원 ② 2020년 ( )원

기타	
4-1. 욕설 등 입주민 부당대우	① 있다 ② 없다
4-2. 부당대우 횟수	월 ( )회
4-3. 일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4-4. 권리찾기 당사자 모임 필요성	① 매우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불필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 **발행처**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발행일** 2020년 9월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18 마포창업복지관 305호
- **전　화** 02-306-2227
- **팩　스** 02-306-0045
- **이메일** mapolabor@gmail.com